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2601

제안일자 : 2025. 4. 21.
제 안 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분쟁조정위원회가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한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○ 안 제14조제2항 중 “정할”을 “권고할”로 한다.(안 제14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4조제2항 중 “정할”을 “권고할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신설>	제14조(조정 비용) ①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5항에 따라,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의 협의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비율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.	제14조(조정 비용) ① (개정안과 같음)
	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조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부담 비율을 **정할** 수 있다.	② ---------- **권고할** ----.
	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	③ (개정안과 같음)

	조정안에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금액 또는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.	